

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소방청 (119구조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개정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(중앙통제단의 기능)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과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전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하여 재난대응 총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긴급구조기관 인력 및 장비동원 조항 신설(안 제12조의2)

- ① 중앙통제단장은 영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.
  - 1) 해당 시·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
  - 2)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
-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나.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0조의3)

- 임시 현장응급의료소장 각 반별 역할 명시, 응급의료소 운영인력 개선 등
- 다. 표준 지휘조직구조 및 중증도 분류표 간소화 등 법령상 미비점 보완·개선
- “중대·소대·분대·팀”을 반 단위 통합운영으로 표준단위조직 간소화
  - 중증도 분류표 개선(양면→단면) 등 별표 및 서식 개선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

## 제 호

###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해당 기관”을 “긴급구조관련기관”으로, 같은 호 및 제3호 중 “장소 또는 지휘차량”을 각각 “장소, 지휘차량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“제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선착대”를 “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긴급구조기관 출동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”를 “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”을 “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(이하 “시·군·구통제단장”이라 한다) 또는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(이하 “시·도통제단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,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을 “시·군·구통제단장은 시·도통제단장에게, 시·도통제단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법 제38조제4항”을 “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”로, “방송

국”을 “방송사업자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법 제52조제6항”을 “법 제52조제9항”으로, “연락관중”을 “연락관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“지휘본부”를 “기관별지휘소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9조제1항”을 “영 제6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표준지휘조직구조”를 “표준지휘조직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특정장소에 집결”을 “집결”로, “자원의 임시집결지”를 “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및 시설”을 “또는 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임시”를 “구급차가 임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표준지휘조직구조의 팀·분대·소대·중대 및”을 “표준지휘조직도 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표준지휘조직구조”를 “표준지휘조직도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중앙통제단의 구성)”을 “(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중앙통제단”을 “중앙긴급구조통제단(이하 “중앙통제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앙통제단의”를 “중앙통제단장의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긴급구조기관의 인력·장비 동원) ①중앙통제단장은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.

1. 해당 시·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
  2.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
- ②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그 밖에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2호 중 “해양경찰서”를 “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”을 “중앙 및 지역 통제단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결상”을 “의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자원봉사자관리용”을 “자원관리용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호 본문 중 “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”를 “하나의 시·군·구에 재난이 발생하여 당해지역의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부분적”을 “부분 또는 전면적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구조활동”을 “긴급구조활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제3호 중 “의사·간호사”를 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종사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
제19조제2항 중 “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하여 재난현장”을 “재난현장”

으로, “용이한 장소이어야”를 “용이하도록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하여야”로 한다.

제20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1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11항) 중 “제10항까지”를 “제9항까지”로 한다.

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임시의료소의 설치 등) ①통제단장은 제20조 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임시의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구급대장
2. 구조구급센터장
3. 기타 현장지휘관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자

③임시의료소장은 분류반, 응급처치반, 이송반을 지휘·감독하며 응급의료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④임시의료소장은 의료소장 도착 시 임시의료소 조치 및 현장상황을 인계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통제단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의사를”을 “의사 또는 선임 구급대원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3장”을 “2부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전단 중 “이송반원”을 “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2부는 이송반장과”를 “1부는”으로, “각각 1부씩 인계”

를 “인계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언론기관에 대하여”를 “언론기관의”로 한다.

제27조 중 “법 제38조제2항”을 “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”로, “의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”를 “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”으로, “방송사업자”를 “사업자”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8조의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카목”을 “차목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및”을 “내지”로 한다.

제3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6. 가스폭발

제41조제3항 중 “평가수준은 0부터 5까지”를 “평가는 5점척도(1부터5)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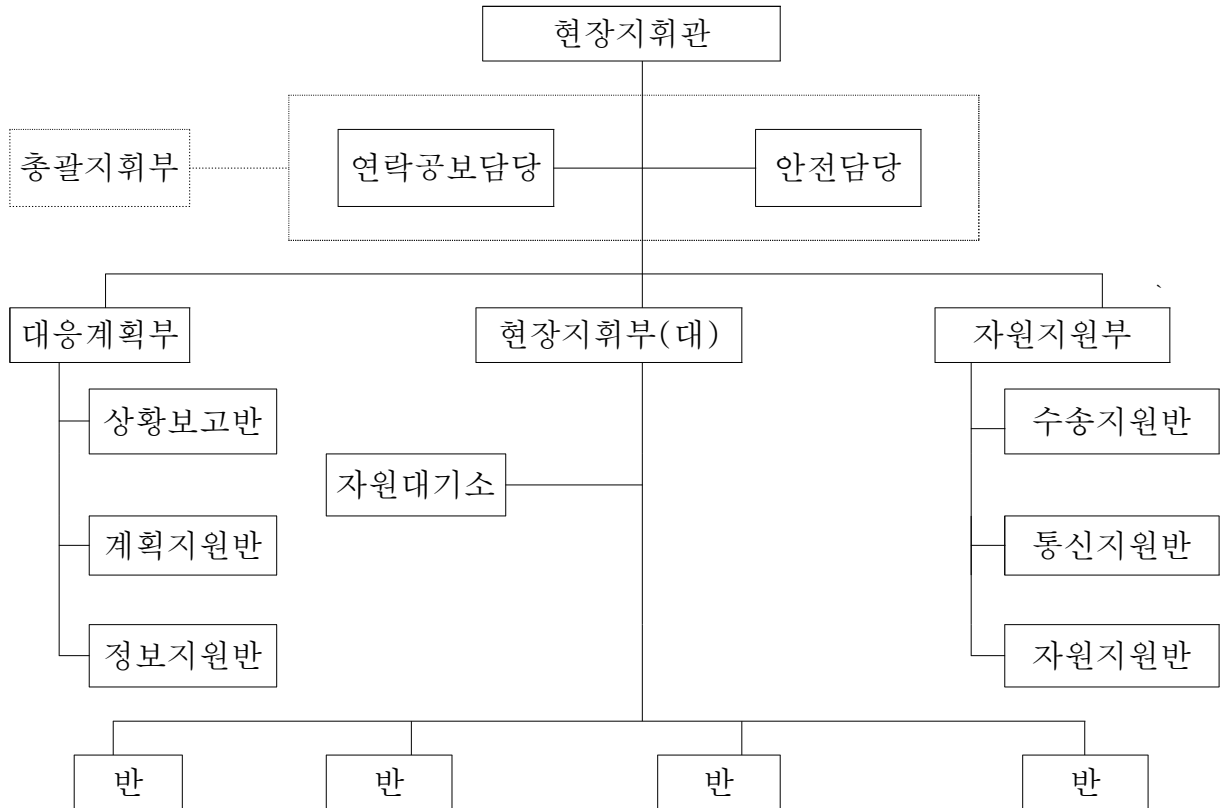
제42조제1항 중 “평가단은”을 “평가단은 평가 종료 후”로, “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)을 “시·군·구통제단장은 시·도통제단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)으로, “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”을 “시·도통제단장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**표준지휘조직도**(제9조제3항 관련)

1. 표준지휘조직도



※ 위 표의 부·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 : 현장지휘관의 임무수행을 기능별로 보좌하는 최고 단위조직
2. 반 : 동일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위조직

2. 부서별기능

부서별		임무
총괄지휘부	연락공보담당	1. 대중정보 및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2. 유관기관과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
	안 전 담 당	1. 소속기관 임무수행지역의 현장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. 소속기관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의 수립 및 교육
대 응 계 획 부		1. 재난상황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상황예측 2.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및 배포
자 원 지 원 부		1. 대응자원 현황을 대응계획부에 제공하고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에 따라 자원의 배분 및 배치 2. 현장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 및 관리
현장지휘부(대)		1.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2.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 관리

**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**(제11조제1호 관련)

계획 번호	1	2	3	4	5	6	7	8	9	10	11
기능별 긴급 구조대응 계획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	지휘 통제	비상 경고	대중 정보	상황 분석	구조 진압	응급 의료	오염 통제	현장 통제	긴급 복구	긴급 구호	재난 통신
소방청	○	○	○	○	○	△	△	△	△	△	○
국방부	△				△	△	△	△	△	△	△
과학기술정보통신부		△	△	△			△		△	△	△
산업통상자원부				△			△		△		
보건복지부					△	○	△	△		△	△
환경부						△	○		△		△
국토교통부	△		△				△		○		
방송통신위원회			△						△		△
경찰청	△	△	△	△	△		△	○			△
기상청			△								
산림청					△						△
대한적십자사						△	△		△	○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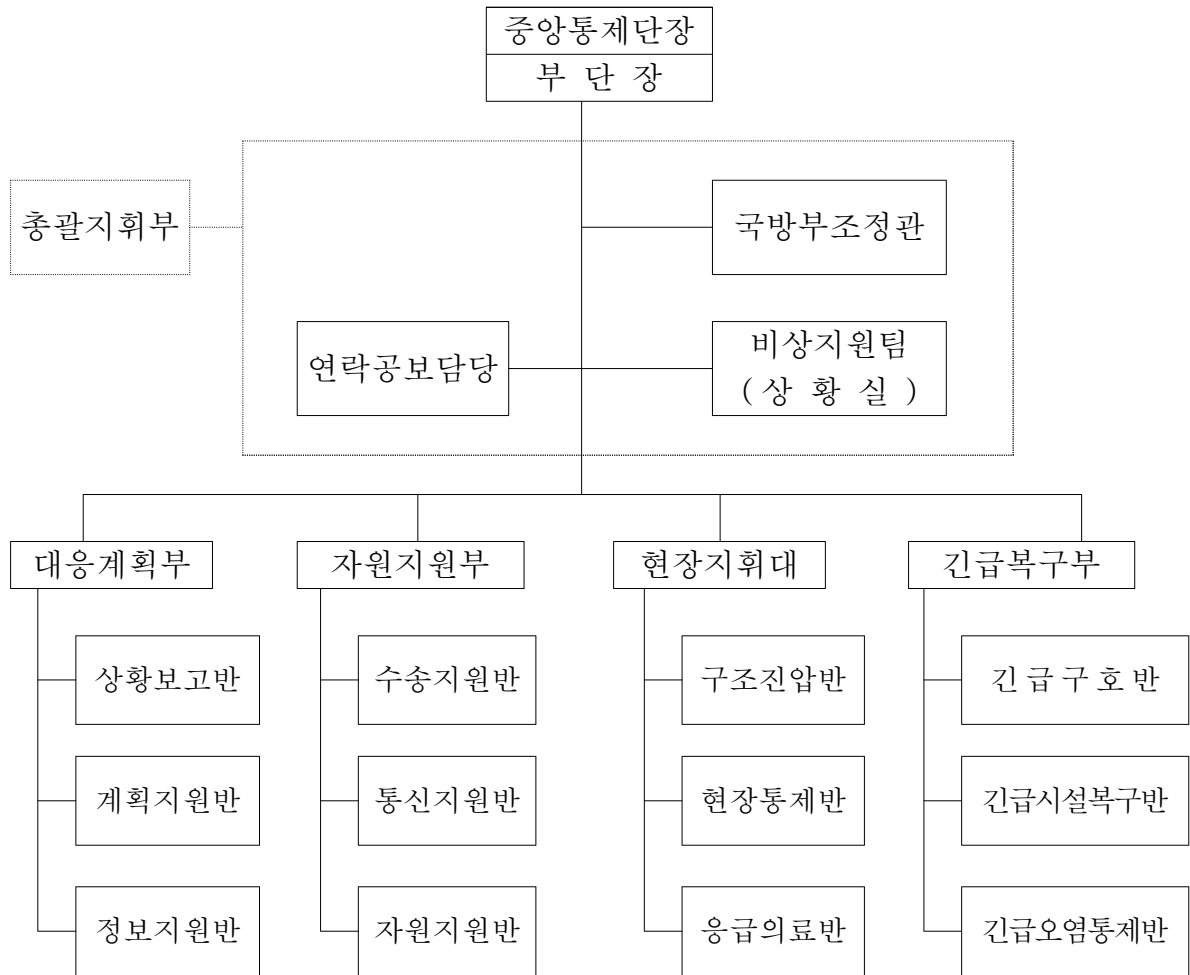
비고

1. “○” 는 책임기관을 말한다.
2. “△” 는 지원기관을 말한다.
3.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.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3]

**중앙통제단의 구성** (제12조제1항 관련)

1. 중앙통제단 조직도



2. 부서별 임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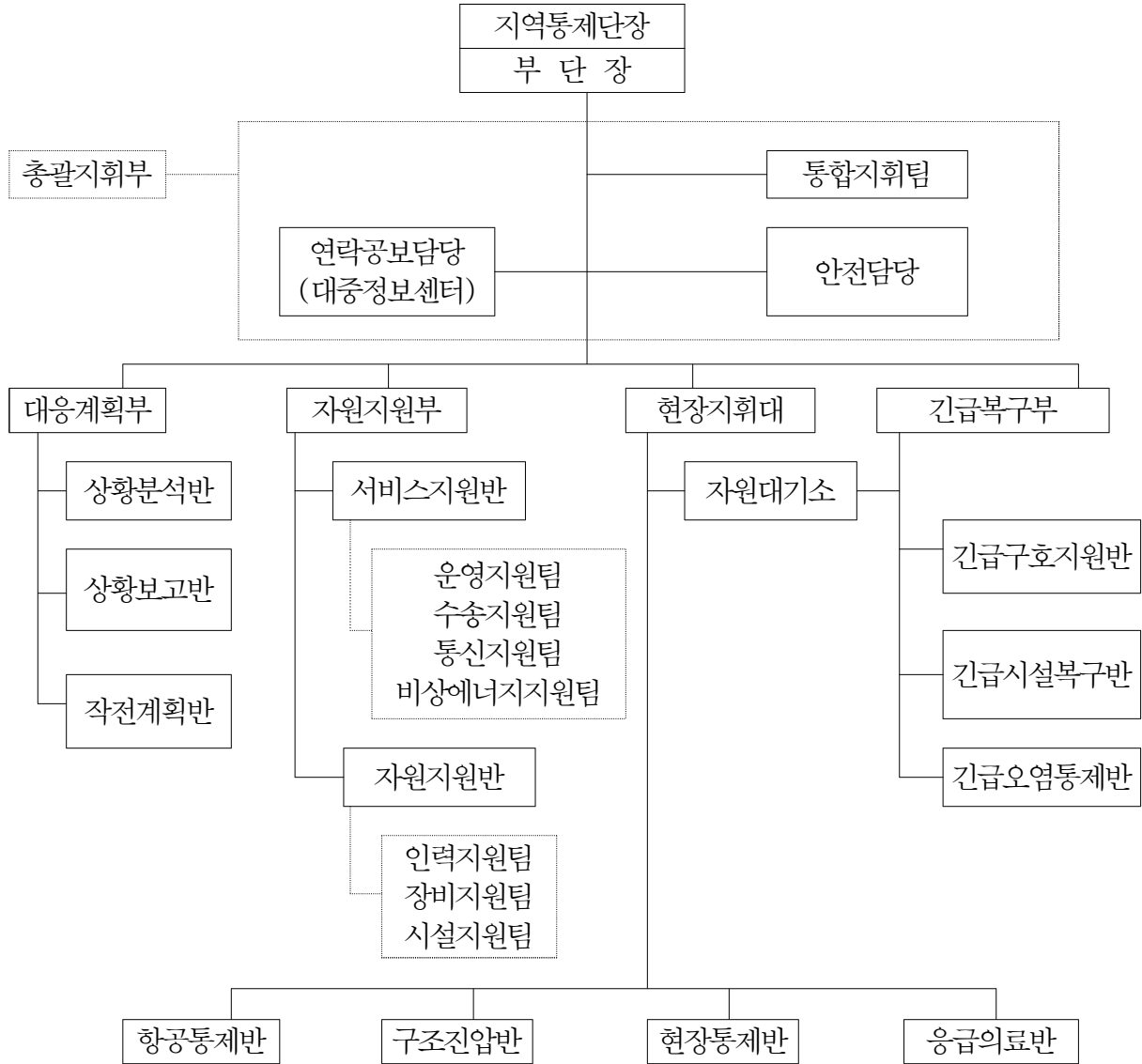
부 서 별		주 요 임 무	대응계획
중앙통제단장		1.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·조정·통제 2.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	지휘통제 계획(#1)
총괄 지휘부	국방부 조정관	1. 중앙통제단장과 공동으로 국방부의 긴급구조 지원활동 조정·통제 2.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시 대규모 탐색구조 활동 지원	국방부 세 부대응계 획
	연락공 보담당	1. 대중정보계획(#3) 가동 2.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3.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(#2) 가 동 4.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	대중정보 계획(#3)

	비상지원팀 (상 황 실)	1. 중앙통제단 지원기능수행 2. 긴급구조대응계획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3. 각 소속 기관·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	기능별 대응계획(#1-11)
대 응 계 획 부	상황보고반	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·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	지휘통제 계획(#1)
	계획지원반	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의 작전 계획 수립지원	지휘통제 계획(#1)
	정보지원반	시·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	지휘통제 계획(#1)
자 원 지 원 부	수송지원반	1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지원 2.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	지휘통제 계획(#1)
	통신지원반	1.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청의 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2.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	재난통신 계획(#11)
	자원지원반	소방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·도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	지휘통제 계획(#1)
현 장 지 휘 대	구조진압반	1.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2. 시·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	구조진압 계획(#5)
	현장통제반	1.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2.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	현장통제 계획(#8)
	응급의료반	1.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2.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3. 시·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	응급의료 계획(#6)
긴 급 복 구 부	긴급구호반	1.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2. 시·도 긴급구호활동 지휘·조정·통제	긴급구호 계획(#10)
	긴급시설 복구 반	1.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2.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	긴급복구 계획(#9)
	긴급오염 통제 반	1.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2.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	긴급오염 통제계획(#7)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4]

지역통제단의 구성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지역통제단 조직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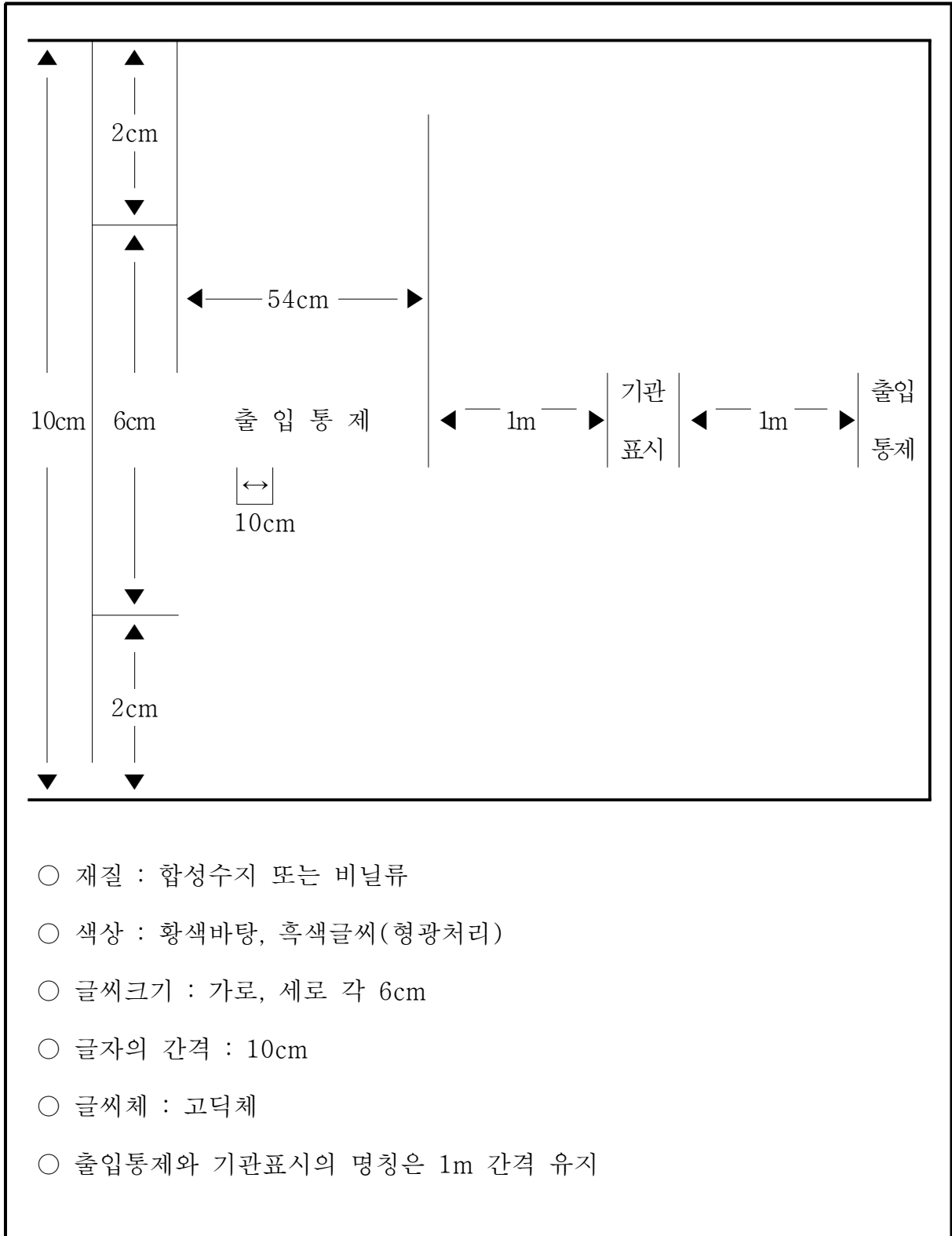
2. 부서별 임무

부 서 별	주 요 임 무	대응계획
지역통제단장	1.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·조정·통제 2. 시·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	지휘통제계획(#1)
총괄지휘부	1.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2.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(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) 3.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4.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	각 소속기관 세부 대응계획
연락공보담당	1.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.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에 관한사항 3.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	대중정보계획(#3)

		4.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	
	안전담당	1.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.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	지휘통제계획(#1)
대응 계획부	상황분석반	1. 재난상황정보의 수집·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2. 재난상황예측 3.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	지휘통제계획(#1)
	상황보고반	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장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	지휘통제계획(#1)
	작전계획반	1.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2.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	지휘통제계획(#1)
자원 지원부	서비스지원반	1. 운영지원팀 :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2. 수송지원팀 :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3. 통신지원팀 :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4. 비상에너지지원팀 : 전기, 연료 등 지원	지휘통제계획(#1) 재난통신계획(#11)
	자원지원반	1. 인력지원팀 :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운영 2. 장비지원팀 :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3. 시설지원팀 :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	지휘통제계획(#1)
현장 지휘대	구조진압반	1. 각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2. 그 밖에 각 시·군·구 구조진압반 지휘·조정·통제 3. 자원대기소 운영	구조진압계획(#5)
	현장통제반	1. 시·도 대피계획 지원 2.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	현장통제계획(#8)
	응급의료반	1. 시·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2.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 3.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4. 사상자 현황 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	응급의료계획(#6)
	항공통제반	1.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2.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	항공구조활동지침
긴급 복구부	긴급구호지원반	1. 시·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2.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	긴급구호계획(#10)
	긴급시설복구반	1. 시·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 활동 2.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 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	긴급복구계획(#9)
	긴급오염통제반	1. 시·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 활동 2.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 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	긴급오염통제계획(#7)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6]

통제선 표시의 형식(제17조제3항 관련)

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7]

중증도 분류표(제22조제3항 관련)

중 증 도 분 류 표		No.
보행여부 : 가능 / 불가능		호흡 : 정상 / 비정상
맥박 : 정상 / 비정상		의식 : 정상 / 비정상
분 류 자 :		
분류시간 :		
이름 :	나이 :	성별 : 남 / 여
발견된 장소 :		
<b>분 류 반</b>		
주요 손상명 및 처치		
생체징후	혈압 / 호흡	맥박 의식
구급차	119 / 119 외	
이송의료기관		
이송(출발)시간		
	사 + 망	
	긴 급	
	응 급	
	비 응 급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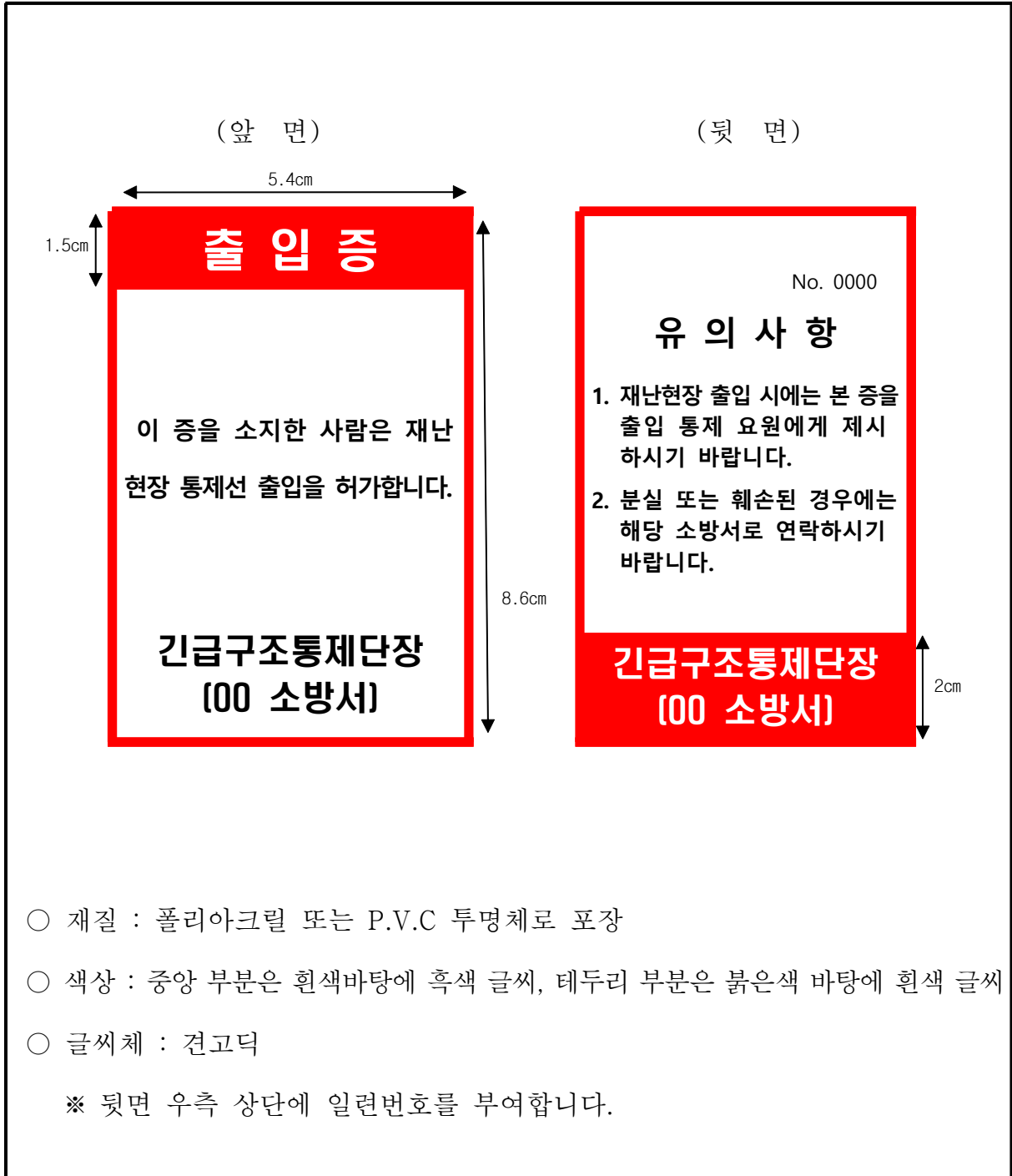
※ 제작방법

- 2장으로 만들되 각 장이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제작
- 일련번호는 연번으로 작성
- 환자의 분류부분은 떼어 낼 수 있도록 제작

※ 비고

-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이송의료기관이 위 중증도 분류표를 1부 보관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합니다.

출입증(제17조제4항 관련)

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기관별지휘소”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<u>해당 기관</u> 소속 직원을 지휘·조정·통제하는 <u>장소 또는 지휘차량</u>을 말한다.</p> <p>3. “현장지휘소”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(이하 “중앙통제단장”이라 한다) 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(이하 “지역통제단장”이라 한다)이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·조정 또는 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<u>장소 또는 지휘차량</u>을 말한다.</p> <p>4. “현장지휘관”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긴급구조관련기관</u> ----- <u>장소 또는 지휘차량 등</u>----- -----.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장소 또는 지휘차량 등</u>----- -----.</p> <p>4. ----- -----</p>



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
제4조(현장지휘관 등의 임무) ①  
· ② (생략)

③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,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시·도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긴급구조체제의 구축)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국 간의 긴급방송체제
2. ~ 9. (생략)

-----  
-----.

제4조(현장지휘관 등의 임무) ①  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 (이하 “시·군·구통제단장”이라 한다) 또는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(이하 “시·도통제단장”이라 한다)----- 시·군·구통제단장은 시·도통제단장에게, 시·도통제단장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긴급구조체제의 구축) 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법 제38조의2 제3항제3호-----  
----- 방송사업자 -----  
-----
2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) ① (생략)

② 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 5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·운영한다.

③ 통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~ 3. (생략)
4.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지휘본부 상호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

④ (생략)

제8조(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)

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재난의 유형별로 수립하되, 다음 각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9조(표준현장지휘체계 등) ① 영

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
제7조(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법 제 52조제9항 -----  
-- 연락관중 -----  
-----.

③-----  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기관별 지휘소 -----  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)

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각호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표준현장지휘체계 등) ① 영

제61조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는 별표 1과 같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용어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원집결지 :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특정장소에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·배치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자원의 임시집결지

2. 자원대기소 :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·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및 시설

3. (생략)

4. 구급차대기소 :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임시 대기하는 장소

5. (생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표준지휘조직도는-----.

④ -----

1. ----- 자원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또는 시설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라 구급차가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6. 단위지휘관 :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의 팀·분대·소대·중대 및 반의 현장활동을 지휘·조정 및 통제하는 자

7. 지휘참모 : 통제단장의 임무 수행을 보좌하거나 통제단장의 특정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통제단의 각 부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의 안전담당 및 연락공보담당

8. (생략)

제12조(중앙통제단의 구성) ①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통제단은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의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비상지원 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6. -----  
--- 표준지휘조직도 중 ---  
-----  
-----  
-----

7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표준지휘조직도의 -----  
-----

8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) ①-----  
-- 중앙긴급구조통제단(이하 “중앙통제단”이라 한다)-----  
-----.

②-----  
-----  
- 중앙통제단장의 -----  
-----  
-----  
-.

제12조의2(긴급구조기관의 인력·장비 동원) ①중앙통제단장은



2.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(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)

3. 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4조(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)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개인용컴퓨터·프린터·복사기·팩스·휴대전화·카메라(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)·녹음기·간이책상 및 결상 등

5. 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봉사자 관리용 무전기

6. 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5조(통제단의 운영기준) 영 제55조제4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.

2. -----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) ①중앙 및 지역 통제단장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 의자 -----  
-----

5. ----- 자원관리용 -----

6.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통제단의 운영기준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생략)

2. 대응1단계 :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. 다만,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3. 4. (생략)

제17조(통제선의 설치) ① 통제단장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 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의사·간호사 등 응급의료요원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하나의 시·군·구에 재난이 발생하여 당해지역의 -----  
----- . -----  
----- 부분 또는 전면적-----.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통제선의 설치) ① -----  
-----  
----- 긴급구조활동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종사자 -----



4. 소방관서에 소속된 공중보건  
의

⑥ ~ ⑨ (생략)

⑩ 소방공무원은 제5항에도 불  
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 
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전  
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 
있다.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 
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소의 설  
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  
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  
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  
는 바에 따른다.

<신 설>

<삭 제>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⑩ ----- 제9항까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0조의3(임시의료소의 설치 등)

① 통제단장은 제20조 5항에도  
불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  
에 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 
전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 
있다.

② 임시의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 
된다.

1. 구급대장
2. 구조구급센터장
3. 기타 현장지휘관의 필요에 따

제22조(분류반의 임무) ① (생략)

② 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
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3장을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. 다만,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·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

라 별도로 지정된 자

③ 임시의료소장은 분류반, 응급처치반, 이송반을 지휘·감독하며 응급의료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임시의료소장은 의료소장 도착 시 임시의료소 조치 및 현장 상황을 인계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통제단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분류반의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의사 또는 선임 구급대원을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2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4조(이송반의 임무) ①·② (생략)

③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·보관한다. 이 경우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(전자장치는 제외한다) 중 1부는 보관하고, 나머지 2부는 이송반장과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각각 1부씩 인계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26조(공동취재단의 구성) ① 통제단장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·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27조(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 등의 설정) 통제단장은 법 제38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이송반의 임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이송하려는 이송반장 또는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1부는 -----

----- 있도록 -----  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공동취재단의 구성) ①-----  
----- 언론기관의 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 등의 설정) ----- 법 제38

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재구역·촬영구역·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를 정할 수 있다.

제28조(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요청) 통제단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30조(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)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중 영 제63조 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4조(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) ①통제단장이 영 제6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마목의

조의2제3항제3호--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--  
사업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8조(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요청) ----- 법 제38조의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--  
-----  
각 호-----  
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) ①-----  
-----  
----- 차목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) ①-----  
----- 내지 -----

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  
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  
능별 재난대응체제는 별표 10과  
같다.

②·③ (생략)

제35조(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  
계획의 작성체계) 영 제63조제1  
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  
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 
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  
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주  
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  
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 
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가스 등의 붕괴

7.·8. (생략)

제41조(평가실시) ①·② (생략)

③ 평가항목별 평가수준은 0부터  
5까지로 한다.

제42조(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)

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  
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 
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, 시  
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

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  
계획의 작성체계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가스폭발

7.·8.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평가실시) ①·② (현행과  
같음)

③----- 평가는 5점척도  
(1부터5)-----.

제42조(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)

① 평가단은 평가 종료 후 ----  
-----  
----- 시  
·군·구 통제단장은 시·도 통

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,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단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-

- 시·도통제단장은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